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5. 24 선고 2017가합516150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신용보증기금

피고1. 주식회사 A

2. B

3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5. 24.

주 문

1. 피고 주식회사 A,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,014,270원 및 그 중 254,814,394원에 대하여 2016. 12. 27.부터 2017. 3. 17.까지는 연 10%의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6. 10. 27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/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/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6. 10. 31. 접수 제24957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재판장판사설민수

판사박설아

판사차기현

별지